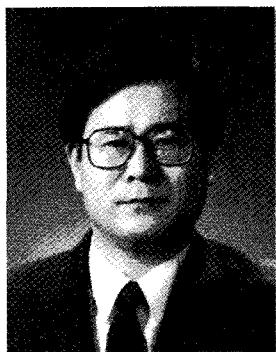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사례 분석



정 병 기
공정위 조사1과장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에는
첫째, 비계열회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계열회사와 차별취급하거나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계열회사를 보조·지원하거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등 상품·용역거래에 의한 것이 있고,
둘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부당지원이 있다.

①. 메리말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와 자금·자산·인력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시행령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내부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금·자산·인력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시행령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내부지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령 및 내부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을 살펴보고 심결 사례를 통해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②.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가. 상품·용역거래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유형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용역거래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위하여 비계열회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거래개시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비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결제조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자기의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하여 계열회사들이 보조·지원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상당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여 계열사의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넷째, 비계열사에 대하여 자기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자기의 구매력이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다섯째,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여섯째, 거래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계열회

사의 상품·용역을 강제판매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자기 또는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직접 구입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유형

시행령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다.¹⁾ 예를 들어 계열회사에게 당해 계열회사가 독립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유기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계열회

1) 이러한 자금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실제적용금리)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받은 회사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회사의 지원없이 자금 차입이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정상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한다.

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회사가 매입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 계열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동산을 시기에 비하여 저가로 계열회사에 매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계열회사에 제공한 후 인건비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당지원 판단기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였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의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 지원한 것으로 본다.

둘째로, 지원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당성 판단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상 원칙적으로 지원받은 회사가 속하는 시장의 구조,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크기, 지원기간, 지원 행위 전후의 지원받은 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도 추상적인 위험성의 존재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결사례²⁾

가. 저리의 연계대출을 통한 자금지원행위

1) 행위사실

현대투자신탁운용(주)는 '98년 3월 2일부터 '99년 2월 1일까지의 기간중 계열회사인 현대투자신탁증권(주)에 대하여 어음할인 또는 콜론제공을 통하여 총 24,770억원(평잔기준)을 시장실세금리보다 어음할인의 경우 0.7~8.26%p, 콜론의 경우 1.37~2.76%p 낮은 이자율로 연계대출³⁾한 사실이 있다.

2) 심결내용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계열사인 현대투자신탁증권(주)를 지원한 행위로 인정된다.

① 지원받은 회사인 현대투자신탁증권(주)가 다른 비계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금리와 비교할 때 피심인이 연계대출한 금리가 현저히 낮은 점, ② 이 전 행위가 있었던 당시는 IMF사태로 금융경색이 극심하였고 특히 현대투자신탁증권의 경우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자금조달의

2) 심결사례는 '99. 10. 28 의결된 1~5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중 일부 건을 요약정리한 것임. 상세 내용은 의결 제 99-212호 및 213호 참조.

3) 연계대출은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자기의 고유계정 또는 자기의 특수관계인에게 콜론을 제공하거나 한국증권금융(주)를 매개로 자기 또는 자기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함.

애로가 더 커진 상황에서 동 사의 연간 매출액의 3.5배에 달하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금리차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로 해소, 유동성 제고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점, ③ 피심인은 투자신탁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콜론과 같은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한 대비 및 투자대기 자금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극히 일부 금액만을 운용함이 정상적인 자금운용임에도 불구하고 총 신탁재산의 최고 24.8%에 달하는 자금을 계열회사에 연계대출한 것은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이 있다.

또한 피심인의 저리연계대출은 ① 본 건 지원행위 당시 현대투자신탁증권(주)는 누적결손금이 약 1.5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어려웠던 점, ② IMF사태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외부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자 피심인은 연계대출규모를 2배 이상 증대하여 현대투자신탁증권(주)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수익증권 판매업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 ③ 현대투자신탁증권(주)는 본 건 이외에도 한도초과대출, 판매보수 과다지급, 광고비 대지급 등을 통해 총 3.4조원을 계열사들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대투자신탁증권(주)의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삼성SDS는 '99년 2월 26일 표면금리 8%의 사채권 및 1년 후 주당 7,150원에 신주 320만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⁴⁾ 230억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SK증권(주)는 같은 날 이를 일괄인수한 후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같은 날 사채권은 삼성증권에게 218억원에 매각하였고 신주인수권은 「삼성」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등 6인에게 11.8억원에 매각하였다.

한편, 삼성증권은 SK증권으로부터 인수한 사채권 218억원을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특수관계인들에게 같은 금액으로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있다.

2) 심결내용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행위는 ① 피심인 삼성SDS가 SK증권에 매각한 대금과 SK증권이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삼성증권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매각한 대금이 230억원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가 모두 '99년 2월 26일 하루만에 완료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도하에 SK증권과 삼성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신주인수권상의 주당 인수가격 7,150원은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 54,750원~141,5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③ 삼성SDS는 '98년 7월

4)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주식인수권리를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음.

1일 삼성전자로부터 시스템 사업을 양수하여 당 기준이익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무상황이 대폭 향상되고 있었고 관련시장인 전산인프라 및 시스템관리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삼성SDS의 주식가치는 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① 본 건과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는 동일인의 후손이나 친·인척이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에 저가로 인수토록 함으로써 계열회사를 지배하도록 하거나 상장 후 막대한 주식매각차익이나 평가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점, ② 본 건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이재용은 과거에도 (주)에스원의 주식을 상장 전(94)에 저가로 매입하였다가 상장 후(96년 8월~11월) 매각하여 약 162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있었던 점, ③ 이러한 지원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삼성」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선단식 경영이 유지·강화되는 점, ④ 이 건 지원행위의 수혜자인 특수관계인은 여타 「삼성」 계열회사들의 지배주주이기도 하는 바 지원금액을 다시 이들 회사에 이전함으로써 향후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본 건 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공정**

토 막 상 식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률상 독립단위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조직체로 기업을 이룬다. 따라서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관계의 진상을 명시하지 않은 지배회사의 단독 대차대조표만으로는 그 진실한 재정상태를 충분히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모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배후에 있는 재정상태를 명백히 한다.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절차는 ①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는 동종의 것을 합계하고, ②양자간의 채권채무를 각각 상계 제거하며, ③양자간의 출자관계를 정리한다.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연결재무제표보다 계열사 대상을 확대,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고 계열사간 채무보증 현황을 첨부한 재무제표.

국제통화기금(IMF)은 연결재무제표가 계열사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데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